

정전지하도로점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처리결과(중간보고)

제 전 시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처리결과(중간보고)

1. 시설의 개요

- 위 치 : 청전동 643번지일원
- 시 행 자 : 선덕실업(주) 대표 이 선 규
- 시 행 면적 : 1,226.29m²(371평)
 - 지하도로 A=558.42m(출입구4개소포함)
 - 지하상가 A=474.62m²(점포 26개소)
 - 부대시설 A=193.25m²(기계실,화장실,펌프실)
- 사 업 기 간 : '97. 3. 20 ~ '97. 12. 31
- 사 업 비 : 2,900 백만원
- 사업시행의 관련법 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법(당초: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추진당시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경영협회 공동 주관한 '97 경영행정 연구발표에서 사업유치 성공사례로 채택되어 발표 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 명 칭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6명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 재 환 의원)
- 조사기간 : 2000. 9. 20 ~ 2000. 12. 21
- 조사의 목적
 -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의 추진실태와 이에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 1)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수립 부적정
 - 2)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의 부적정
 -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협약서의 이행상태 부실
 - 4) 공사분야별 시공상태 관리부실

- 5) 사업시행자의 대출에 개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업무처리 소홀
- 6)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방치
- 7)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미흡
- 8) 기타 사업관련 전. 현직 공무원의 비위사항에 대하여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사업은 추진 당시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공동 개최하는 「97 경영행정연구」에서 채택되는 등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성공사례로 발표하였으나
 -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법규 연찬과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에 문제점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조치결과(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적사항	시정요구내용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	비고
1.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일제재점검하고 향후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치밀하게 수립추진 하기 바람 ○ 향후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기직책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사업 추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방침 ○ 주요사업계획의 일제점검은 제천시 주요사업 심사계획에 의하여 시행 ○ 사업시행에 대한 점검은 공사비 1억원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민간부분 투자사업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 2. 점검시기 : 예분기별 시행 3.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대책수립 [향후계획] ○ 1/4분기 점검은 4월경 실시예정 	추진중
2. 청전지하상가시설에 대한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도로겸 상가시설공사와 관련 한 상수도 관의 폐설상태와 지하 시설내의 누수량 문제에 대하여 ○ 분야별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점검 실시후 응급대책을 시행하고 ○ 준공처리전 공인기관의 안전도검사 실시하여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방법: 분야별 기술직공무원 실시 -점검일시: 2001. 1. 16 -점검결과: 폭설과 혹한으로 정화 한 판단이 어려워 해빙후 2차 점검 실시 종합대책 수립 ○ 준공처리전 공인기관의 안전도 검사 -준공검사시 별도 이행 	추진중
3. 선덕실업(주)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 변제액 구상금 청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덕실업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체천시에 손해를 끼쳤음으로 ○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법률적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상황) ○ 구상금청구에 따른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일시 : 2001. 1. 19 -질의기관 : 행정자치부, 법제처 ○ 질의결과에 따라 필요한조치 강구 [향후계획] 	추진중

4. 업무관련 전·현 직공무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p>(기) 징계조치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계의결요구 : 1999. 3. 4(충청북도) ○ 대상자 및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도시개발담당 이명진(증정제) - 당시 도시과장 박기영(경정제) - 산업건설국장 강태운(경정제) ※ 담당자 토목주사보 이승국은 징계당시 퇴직 ○ 정계의결(충북도인사위) : 1999. 6. 26 의결시 동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르렀고 해당공무원들이 표창, 수상경력 등이 참작되어 불문경고의 결에 따라 1999. 6. 29 훈계처분 되었음 (조치현황) ○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2000. 12.27기소)처분결과 통보 된 (2001.1.2검찰에서 통보) 당시 도시개발담당 이명진에 대하여는 청렴의 의무(뇌물수수)위반 및 사업자 선정소홀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2001.2.13충청북도에 징계요구 	추진중
5. 사업시행자인 선역실업(주)대표 이선균에 대한 조치	<p>① 부당한 서류제출에 따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제출시 선역실업(주)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력을 갖춘 서류가 아닌 선광실업의 경영실적서 첨부 제출 (성광실업은 '93.7.14폐업신고와 '96.12.17 해산 말소회사임) 	<p>(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전설사업자 모집 공고시 제출서류중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 사업시행자 대표 이선균은 서울 영등포소재 선광실업(주)도 운영하면서 청전지하상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 6. 5 선역실업(주)를 설립하였고 - 1986.9. 24 진주시로부터 진주시 중앙로지하상가 시행허가까지 받아 시장개설 관리운영까지 하였으며 - 청전지하상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서류제출 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가 아닌 진주지하상가를 운영하는 선광실업의 경영 실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한 서류제출로 인정되나 	추진중

		<p>-현재 시설물을 완공한 상태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법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자문등 포함) 처리할 계획임</p>	
	<p>②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은 협약서 제20조에 의하여 지하상가 분양 임대계약서를 보완 제출치 않고 임의 분양 및 담보분양 계약과 이중계약</p>	<p>(검토)</p> <p>-임의 분양 및 담보분양, 이중분양 등은 선덕실업과 분양 계약자간의 쌍방계약임으로 시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고 계약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p> <p>(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의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고소, 고발에 의하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은 2000년 12월 8일 구속수감 된 상태임 (향후계획) ○시에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또는 고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자문을 받아 조치코자 합니다. 	추진중
6. 공사감리자인 삼복토목엔지니어링 전 대표 이사 김주현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복토목엔지니어링의 전 대표이사 김주현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공사 감리 계약 체결을 하고 감리비 문제로 감리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관리법에 의한 등록여부 확인 -확인의뢰: 2001. 1. 31 -의뢰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확인사항: 97년 당시 삼복토목엔지니어링이 건설관리법에 의한 등록업체 여부 ○법률적 검토 감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나 등록을 하지 않고 감리업을 하였음으로 동법 제28조 위반 ○조치내용 법규위반 내용을 해당 관리청에 통보 조치(2001. 2. 15) 	완료
7. 토목분야 사공자인 장풍건설(주)와 시업이행보증 한 서원건설(주)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풍건설의 청전지하도로겸상가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체결 때 제출한 공사지명원의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 및 상가시설의 시공 실적에 대하여 허위서류작성 여부의 진상규명을 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도급원의 공사실적 진상여부 -사실확인의뢰: 장풍건설(주) -의뢰일시: 2001. 1. 9 -확인통보: 2001. 1. 17 -회신결과 .2000년12월의회청문서 당사가 선덕실업에 제출한 공사지명원증 	

지적사항	시정요구내용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전지하상가의 보증업체인 원주 소재 서원건설(대표이사 권태술) 보증 진위여부(시공보증, 또는 협약서에 의한 이행보증)를 법률적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요구 	<p>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았으나 변조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하였음</p> <p>● 향후계획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나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장풍건설은 공동구의 시공실적이 있어 별도의 조치가 불요하나 선덕실업에 대하여는 종합적 자문을 받아 조치코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의한 이행보증여부 - 사실확인의뢰 : 서원건설 - 의뢰일시 : 2001. 1. 9 - 확인통보 : 2001. 1. 17 - 회신결과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로 일반적 사항인 수급자의 계약이행 보증임 ● 향후검토사항 세부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계획임 	검토 주진중
8.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이선균, 이종영, 이석균, 권태술 ○ 부과액 : 300~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부과 - 사전통지 : 2001. 1. 20 - 의견제출기한 : 2001. 2. 6까지 - 부과액 : 각 300,000씩 부과 - 부과대상 : 이선균의 3명 	추진중
9. 청전지하도로겸상 가시설의 마무리 대책강구 및 마무리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방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 등을 연구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책임의식과 소신을 갖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여 정상을 영이 되도록 조치 (추진현황) ○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유사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연구 분석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사전 대책을 철저히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문의뢰 3회 - 법률적 검토(마무리에 대한 검토) (향후계획) ○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받아 향후 문제점이 최소화 될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추진중

□ 시정요구 사항증

-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 변제액의 구상금 조치
-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에 대한 조치로 부당한 서류제출에 따른 조치, 임대, 분양 계획서를 제출치 않고 임의분양 및 담보분양 계약과 이중계약.
- 토목분야 시공자인 장풍건설(주)와 사업이행 보증한 서원건설(주)에 대한 조치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마무리대책강구 및 마무리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철저에 대하여

-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되지 않아 법률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전지하상가 마무리대책에 대한 검토

마무리주체	방법	검토 예상 결과
1) 협의 준공방안 (선덕실업에서 종결 방안)	가) 선덕실업에서 자의적 마무리 -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 완료기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 법률적인 부담없이 사업완료기대 ○ 단점 : 사업마무리 장기화 우려 ○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의 재력, 마무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의 완료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나 - 현재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사업시행의 마무리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나) 체권자에게 양도양수	<p>[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과 채권단간에 양도양수 의사가 있을 때 가능 [사업완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조건이행(주차장 확보, 설계변경) - 시설물보완 -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의 기부채납 [예상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후 준공절차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 채권단 구성지난(분양자, 체권자, 자체납품, 공사대금미불, 식대등 소액채권으로 이해상충)
	다) 제3자에게 사업자 변경	<p>[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인수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가능 [사업완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조건이행(주차장 확보, 설계변경) - 시설물보완 -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의 기부채납 [예상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단의 반발예상

마무리주체	방 법	검토 예상 결과
2) 강제조치	가) 관련법에 의한 순차적 조치 ① 우리시에서 마무리 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 선덕실업 대응방안 예상 - 사업시행자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예상 우리시 패.승소시 다음단계추진 ④ 협약해지 ⑤ 사업계획 취소(철회) ⑥ 우리시에서 공사준공 ⑦ 분양등 사업종결	(예상되는 문제점) (1)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예상 ○ 행정소송 : 허가취소 철회,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2) 채권과 관련한 민원 ○ 행정소송 :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집단민원 : 분양자에 대한 구제대책 (3) 허가취소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및 준공조치 ○ 시설물의 보호조치 예산소요 ○ 준공을 위한 점검 및 시설비투자
	② 채권자에 의한 마무리 ⑦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 선덕실업 대응결과에 따라 예상 - 사업시행자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예상 우리시 승소시 다음단계추진 ④ 채권단 신고공고 ⑤ 채권자에게 사업추진단 구성 ⑥ 사업시행자 변경 ⑦ 공사준공 및 분양등 사업종결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라 선덕실업에서 재송제기 예상 ○ 채권자의 구제에 따른 채권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채권자에 의한 사업추진단 구성과 준공 지난 - 채권단의 상호간 이해상충 - 사업완공을 위한 공인기관의 안전도검사비, 주차장 확보, 설계변경, 현재시설물의 보완공사비 추가부담
	③ 제3자에 의한 마무리 ⑦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 선덕실업 대응결과에 따라 다음단계추진(승소시) ④ 제3사업자 모집공고 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⑥ 공사준공 및 분양등 사업종결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라 선덕실업에서 재송제기 예상

-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재정적, 법률적(각종소송의 피소원인제공) 부담이 없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코자 하오며
- 또한 좀더 심층적인 법률적 해석을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도 요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4. 양 후 계획

- 우리 시에서는 검토결과와 좀더 심층적인 법률해석을 토대로 최종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나
- 시민들이 청전지하상가 위치의 대로(35m)를 통행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횡단보도의 설치가 주목적 이었고 현재 지하횡단보도가 이용 가능한 상태임으로
- 지하통로시설을 일부보완(비가림시설 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이용토록 하고
- 부대시설인 상가시설은 지하횡단보도를 확보하는데 부수적으로 설치하게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선덕실업의 문제임으로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유동적 이전 하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관여치 않을 계획입니다.
- 이는 차후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게 되면 각종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에 피소되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추진 일정

- 양도, 양수 의사 타진 2001. 3월중
- 유사사례, 판례등 조사 2001. 3월까지
- 법률자문 완료 2001. 3월까지
- 향후대책(안) 모색 2001. 4월중
- 향후 대책에 따른 예산확보 2001. 5월중

제천시

우(390-701)제천시 천남동12-2/전화(0443)640-6364(행)6364전송640-6379
 처리부서: 도시건축과(별관1층) 과장 풍순민 / 지방보국주사 이병식 / 텔당자 이병식

문서번호 도전58700-6

시행일자 2000.1.9. (년)

(경유) : 제 1 안

받음 : 내 부결 제

참조 :

보존기간	년	시장
공개여부		<i>16.1.9</i>
부시장		
국장	전결	
과장	<i>9</i>	
기안자	<i>기안자</i>	
심사자	<i>심사자</i>	심사일 2000. 1. 9

제 목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일제점검 계획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시공분야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항후 마무리대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 일제점검계획

1) 점검대상 : 상수도관(500mm) 배설상태(안전성, 누수등)

지하시설내의 누수발생 상태

공사와 관련한 인근의 실태(지반침하 등)

각 분야별 부실시공 요인 (토목, 건축, 상수도 등)

2) 점검방법 :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동점검

○ 상수도 분야 : 수도사업소

○ 토목 분야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 건축 분야 :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3) 점검일시 : 2001. 1.16~1.17(2일간) 활동점검

4) 보고서제출 : 2001. 1.20 까지 “풀”

(제 2 안)

받음 : 수도사업소장

도건 58700-

제 목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일제점검 계획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의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시공분야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시급한 대
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향후 마무리대책에
적정을 기하하기 위하여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계획

- 1) 점검대상 : 상수도관(500mm) 매설상태(안전성, 누수등)
 지하시설내의 누수발생 상태
 공사와 관련한 인근의 실태(지반침하 등)
 각 분야별 부실시공 요인 (토목, 건축, 상수도 등)
- 2) 점검방법 :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점검
 - 상수도 분야 : 수도사업소(소장이 점검공무원 지정)
 - 토 목 분 야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 건 축 분 야 :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 3) 점검일시 : 2001. 1.16~1.17(2일간) 합동점검
- 4) 보고서제출 : 2001. 1.20 까지 “끝”

제 천 시 장

출장결과보고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일시 : 2001년 1월 16일

○출장지 :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앞 현장

○출장목적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점검 차

□점검방법 :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검사

□점검자 :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주택담당 서완용, 지방토목서기 권천숙

□점검결과

점검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외부상태	-냉각탑 시설	-철망훼손으로 외부미관 저해	
	-자가발전 배기실	-철망훼손	
	-출입구	-시설물의 파손은 없으나 냉동등으로 불량스러움	
○지하내부상태	-출입구	-백태현상발생(2개소) (비둘기아파트 정문 좌.우측통로부분)	
	-계단시설	-파손 및 손상된 곳은 없으나 폭설로 인하여 미끄러움 -비둘기아파트정문 우측통로 비상등 파손	
	-누수여부	-비둘기 아파트 정문 우측통로 누수현상으로 결빙	
	-내부통로시설	-시설물상태 양호	
	-화장실	-시전장치로 확인불가	
	-기계시설	-시선장치로 확인 불가	
	-가로등시설	-6등이 설치 작동중(주간2.야간6)	
○공사와 관련한 인근의 실태	-기타집기상태	-상가내의 시설물은 시선장치로 확인 불가 -천정이 부분적으로 파손	
	-접속부위의 침하여부	-지하도출입구(4개소)의 보도 불편이 약간 침하 -지하도로공사 접속부의 도로포장부위 균열현상발생	

□ 종합 의견

- 폭설로 인하여 외부시설과 공사와 관련한 인근지반의 침하상태 등은 식별이 불가능하였고
- 지하도의 4개출입구 용벽, 슬라브 및 내부기등의 구조체에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균열은 없었으며
- 비둘기 아파트쪽 출입구(2개소) 상부 슬라브에서 일부 백화현상(백태(白苔)) 또는 풍해(風解)라고도 했. 콘크리트 속의 수산화석회가 물에 녹아서 스며나와 탄산화하고, 이것이 건조하면 백색 결정이 된. 에폭히드레인스가 생기기 쉬운 온도 · 습도 · 일조(日照)조건은 복장에서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나, 습도가 높은 응당 부분에 많이 생긴. 품질이 나쁜 다공질(多孔質) 콘크리트나 탄산화하기 쉬운 조건이 있으면 많이 생기는 현상인)이 있음
- 시설의 관리는 통로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시전장치를 하여 출입이 제한 되여 있는 상태이나 현재 관리인이 상주 관리를 하지 않아 지하도로시설 내부에 낚서 등을 하여 혼잡스러운 상태이며 시민의 통행이 잦은 편은 아님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공사와 관련한 하자(지반의 침하 상태 등)는 현재 폭설로 인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빙후 2차점검을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하여
- 현재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외관상으로 파손 되여 미관을 저해하는 냉각탑의 철망과 자가발전 시설의 배기실, 지하계단 스라브 백태현상, 지하계단 누수에 대하여는 지하상가의 향후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 지하계단 누수로 인한 결빙은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수시 얼음 깨기 등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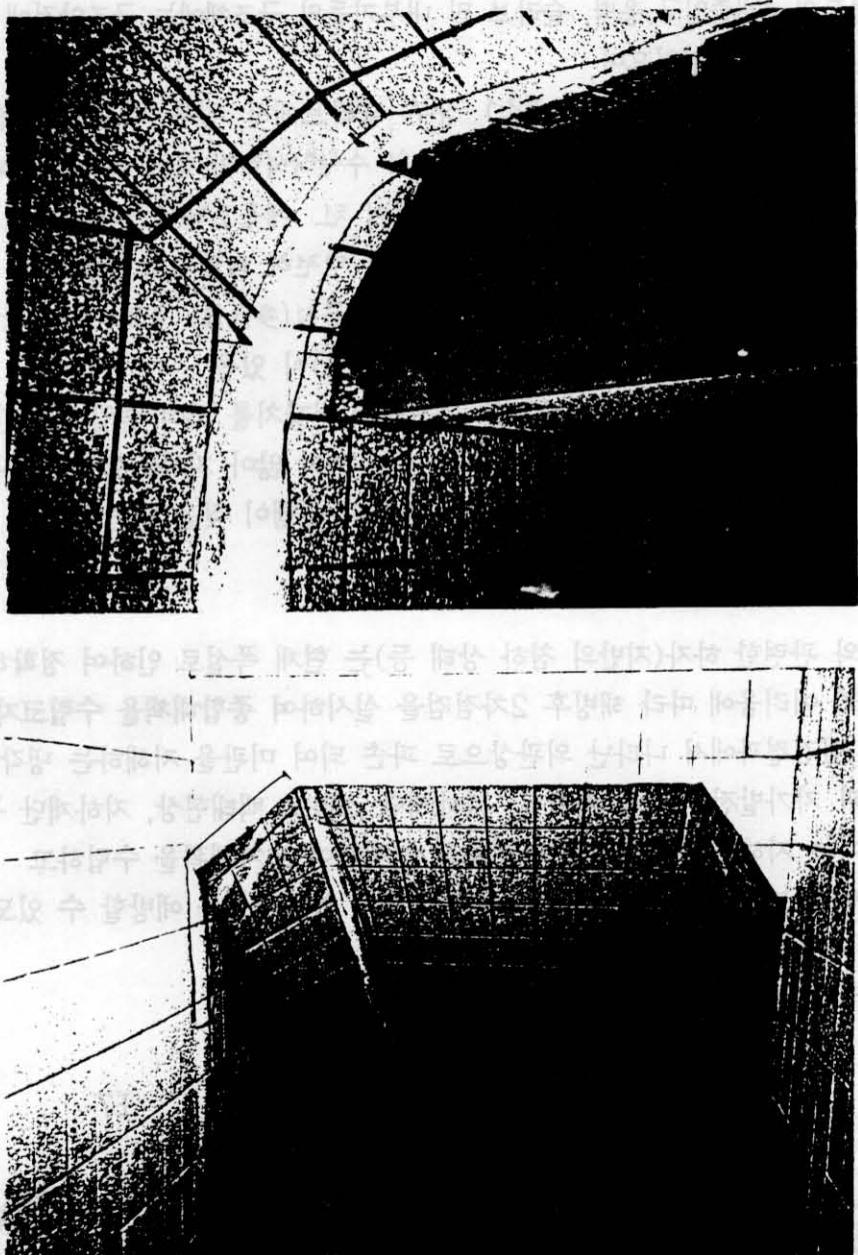
*2차 점검계획 : 2001년 3월 해빙후

2001. 1. 17

보고자					도시개발담당	이	병
문제번호	보증년월	점	방	률			
년	월	서	중	률			
기	안	자	보	조	기	관	경
환경	화	단	파	장	국	장	재
결							
정	기	예	수	면	면	수	면

전 축 담 당 서 완 4008
지방토목서기 권 천 숙

사진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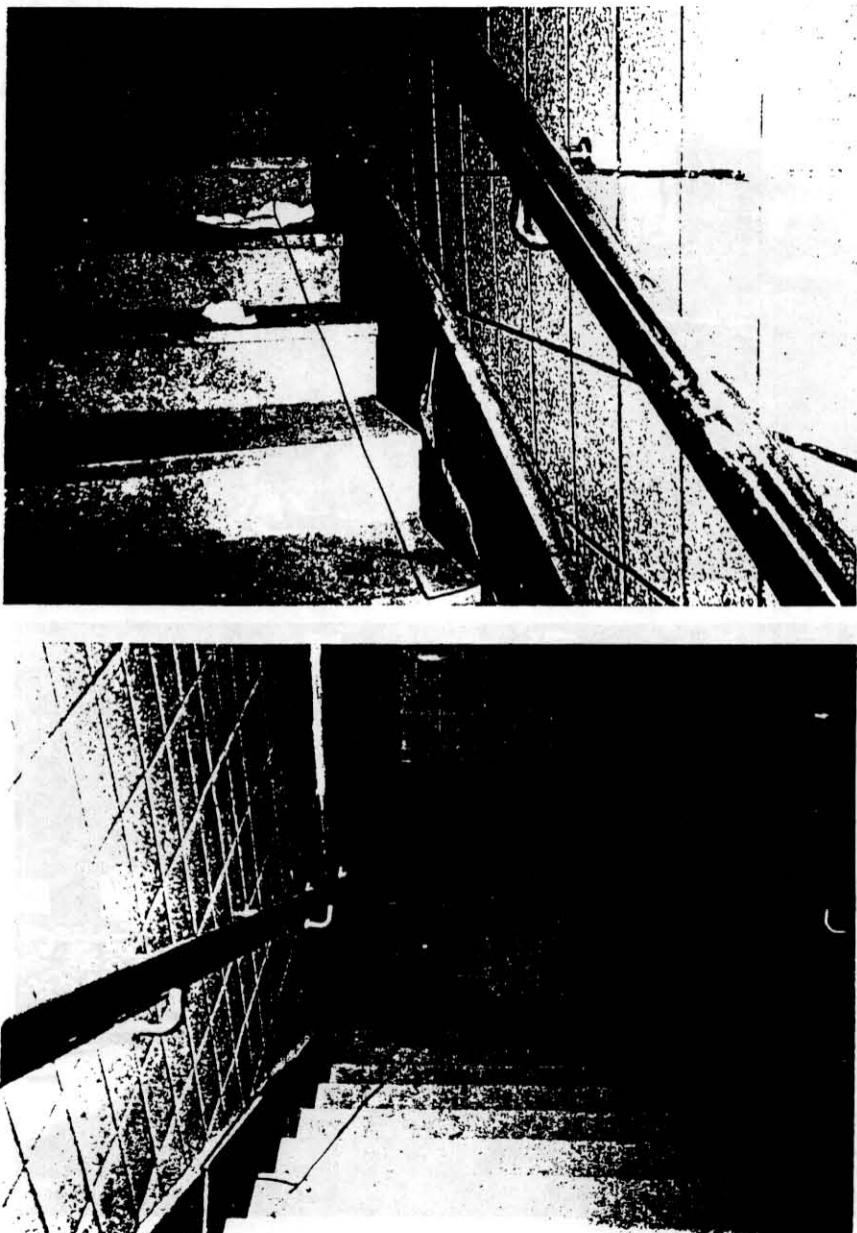


사진설명

벽면 백화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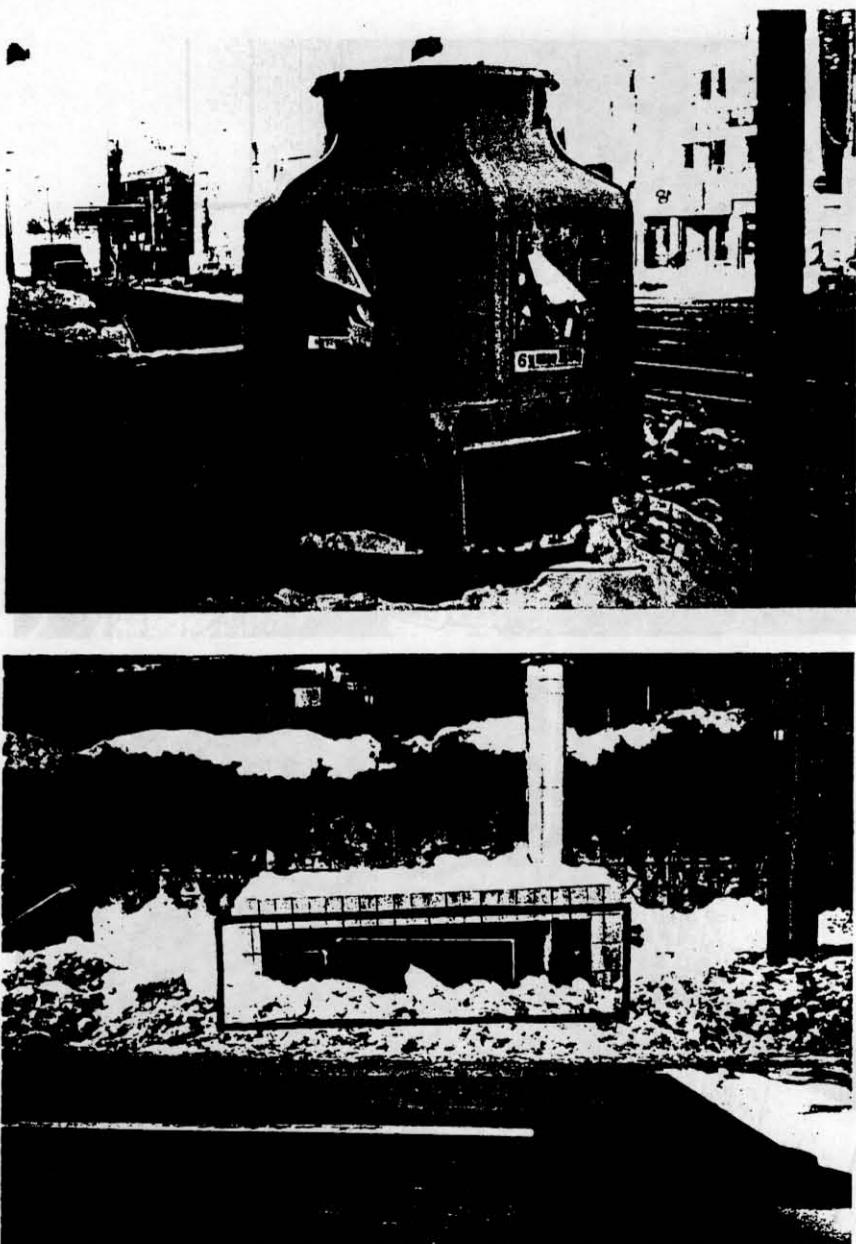
【文書現象】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벽면 누수에 따른 배수구 결빙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환풍시설 훼손

換風設備 毁損 与和 防空部 防空團

수 도 사 업 소

우 (390-090) 제천시 고암동 124 - 4 / 전화 (0443) 640 - 6446 (행) 6446 전송 640 - 6449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소장 홍순민 / 공무담당 김태억 / 담당자 김한복

문서번호 수도 58442 - 100

시행일자 2001. 1. 9

공개여부 공개

수신 도시건축과장

참조

선			지	
접	일자 시간	2001. 1. 18	시	
수	번호	557	결	즉시
			재	2001. 1. 18
	처리과	도시건축과	·	
	담당자		공	
	심사자		람	기 2001. 1. 18
			심사일	

제 목 :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일제 점검결과 제출

- 도건 58700-56 (2001. 1. 9)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호에 의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반납고지서 1부 끝

수 도 사 업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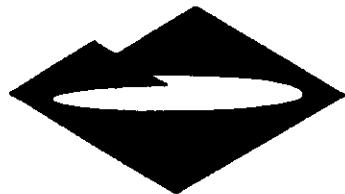


문서번호	수도 58440- 99
보존기간	영 구
보고일자	2001. 1. 17.

기안자	수도사업 소 장	산업건설 국 장	부시장	시 장
★◎ <i>766789</i>	전 결 <i>766789</i>	35 <i>766789</i>	71 12	
협조	공무담당 <i>766789</i>			
				

결 과 보 고 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일제 점검결과



원본대조필
地方土木主事補 金漢福

수 도 사 업 소

결 과 보 고 서

명에 의거 도건 58700-56 (2001. 1. 9)호와 관련 청전지하도로겸 상가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에 의거 출장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01. 1. 16. ~ 1. 17 (2 일간)
- 장 소 : 청전동 지하도로겸상가
- 출 장 자 : 시험당당 정현모, 김한복, 이태희, 엄태선.
- 목 적 : 제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의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 시설의 시공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향후 마무리대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상수도관(500mm) 매설상태(안전성, 누수등)
지하시설내의 누수등 상태

□ 점검결과

○ 상수도관(500mm)의 매설상태

- 상수도관은 지하매설물로써 육안 확인이 불가 함
- 심도측정기를 이용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파악코자 하였으나, 동 노선에 광케이블 및 전선에 의한 전파장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 함.

○ 지하시설내의 누수발생 상태

- 지하시설물내(배관)에서 누수되는 곳은 발견 못함
- 지하 기계실에서 물이 고여 평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의 성분 분석.

▷ 수질시험결과

구 분	지 하 상 가 에 스며드는 물	주변 수돗물 (원조닭똥집닭내장 친문)	비 고
잔류 염소량	미 검 출	0.4 mg/ℓ	
수소이온농도 (P H)	9.08	7.71	

▷ 수질시험 결과 및 현장실태에 의한 분석 (시험담당 소견)

- 지하상가에서 채취한 물에서는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음.
 - 수소이온농도는 하수에서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바, 수치상으로 볼 때 하수가 스며드는 것으로 보임.
 - 물이 고이는 맨홀 벽체에 협기성곰팡이균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질이 좋지 않은 하수로 판단됨.
 - 지하상가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장마철에는 우수량이 많이 증가하고 가뭄에는 유수량이 급격히 감소 한다고 함
-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상가에 스며드는 물은 수돗물보다는 전석층의 지하수 또는 가정하수등이 지하상가 바닥을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사료됨.

2001년 1월 17일

보고자 : 시험당당(화 6) 정현모
지방토목 7급 김한복
지방기계 7급 이태희
지방기계원 8급 엄태선

제천시장 귀하

힐보아 제2의건국, 뜻보아 국난극복
제 천 시

우(390 - 701)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 / (전화)640-6035 / (행)6035 / 전송640-6049
처리부서 : 기획담당관실(본관2층)/ 담당관 : 최명현 /의회법무담당 : 홍완식 / 담당자 : 박대기

문서번호 기획13130 -124

시행일자 2001. 1. 30

공개여부 공개

(경 유)

수 신 도시건축과장

참 조

선 람		中	지 시	
접 수	일 자 시 간	2001. 2. 01	결 재	중국
	번 호	370	·	기획
	처 리 파	도시건축과	공 동 ·	국
	담 당 자		람 기	한국
심 사 자			심 사 일	2001.

제 목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결과 추진상황 제출

1. 도건 58700 - 117(2001. 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결과 추진상황 1부. “끝”

제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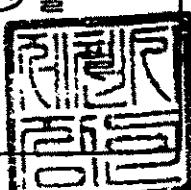
“전걸 기획담당관 최명현”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지적사항	지적내용	추진상황	비고
• 선덕실업(주)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 변제액 구상금 청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덕실업의 보증채무 대위 변제에 따른 제천시에 손해를 끼쳤음으로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와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법률적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상금 청구에 대한 질의 -기획11200-85 (2001. 1.19)호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장) 	추진중
•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대상 : 이선균, 이종영, 이석균, 권태술 부과액 : 300~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 발송 기획13130-90호 (2001.1.20) 의견제출기한 (2001. 2.6까지) 대상 : 이선균, 이종영, 이석균, 권태술 처분할 금액 각각 300천원씩 	추진중 (2001.2.10 부과예정)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이영진	② 소속	제천시 수도사업소	③ 직위(급)	지방토목주사
	한자 季明鎮	④ 주민등록번호		⑤ 재직기간	'71. 10. 16 ~ 현재	
⑥ 주소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아파트 804동 909호						
⑦ 징계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 위반 형의자는 '96. 3. 8 ~ '98. 9. 26까지 제천시청 도시과 도시개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96년 초경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법에 의거 청전동에 지하도로겸 상가를 민자유치하여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1. 직무태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공사 건설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선덕실업(주) 대표 이사 이선균이 이미 '94년도에 폐업신고된 선광실업주식회사 명의로 경영 실적('93~'95)을 만들고, 내용 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등록요건도 갖추지 못한 선덕실업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2. 뇌물 및 향응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만원 뇌물수수 - 200만원 상당의 향응 - 시가불상의 필립스 남자용 손가방 및 갤럭시 시계1점 수수 					
⑧ 징계의결요구권자의견	<input type="radio"/> 징계요구 사유에 적시된 비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증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01년 2월 13일						
제천시장권희						
제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징계사유서

소속 : 제천시 수도사업소

직명 : 지방토목주사

성명 : 이명진

위 징계혐의자는 '74. 04. 20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0. 03. 17부터 2000. 12. 21까지 수도사업소 누수방지담당으로 재직하다 2000. 12. 2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혐의자는 '96. 3. 8 ~ '98. 9. 26까지 제천시청 도시과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96년 초경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에 의거 청전동에 지하도로겸 상가를 민자유치하여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1. 직무태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공사 건설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선덕실업(주) 대표이사 이선균이 이미 '94년도에 폐업신고된 선광실업주식회사 명의로 경영실적('93~'95)을 만들고, 내용 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등록요건도 갖추지 못한 선덕실업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2. 뇌물 및 향응수수

- '96. 8 중순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아파트 804동 909호 본인의 집에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 건설공사 업체인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만원을 건네받았고,
- '97. 4중순경에는 제천시 명동 소재 환영룸싸롱에서 선덕실업주식회사 이사인 이종영으로부터 위와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술과 안주 등 대금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해 5월 초순경에도 제천시 중앙동 소재 대봉룸싸롱에서 다시 술과 안주 등 대금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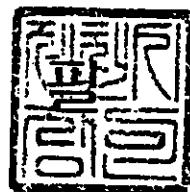
- '97. 9월말경에는 제천시청 도시과사무실에서 시가불상의 필립스 남자용 손가방 1개 및 갤럭시 손목시계 1개를 각 교부받고, '98.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이종영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음
- ※ 동 사건으로 관련공무원이 검찰에서 2001. 12. 27 구속구공판 처분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1차심리공판(2001. 2. 2)을 하고 2차 심리공판(2001. 3. 2)예정임

이와같은 혐의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와 제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의기준) 제1항(별표1)의 기준에 의거 중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참고사항으로서 혐의자는 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99. 6. 26 공사기간 및 착공소홀, 공사비 및 복구비 미예치, 예치공사비 인출소홀, 보증 채무부담 행위 소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불문경고)의결되었음

2001. 2. /3 .

제 천 시 장 권 회



제 천 시

(380-701) 제천시 천남동 12-2 / 전화(043)640-6364 (행정)6364 (전송)640-6379
도시건축과(별관 1층) 과장 신승우 /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 담당자 권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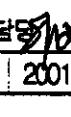
문서번호 도전 57310 - 229

시행일자 2001. 1. 3. (년)

(경유)

받 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총무과장

보증기간	년	시 장
공개여부		
부시장		
국장		
과장 전결		
담당자 ★○●●●	도시개발담당 	협조
심사자 흥성복	심사일 2001. 1. 3.	

제 목 감리전문업체 등록 여부 확인 의뢰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시행한 청전지하보도 겸 상가시설에 대한 감리계약된 아래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사업체인지를 확인하오니 등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업체 현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주 소	비고
'97년	삼북 토목 엔지니어링	윤경철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152	
2001년 현재	청 일 엔지니어링	김주현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152	

붙임 :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끝.

제 천 시 장

공사감리계약서

1. 공사감리계약 건명 : 제천 지하도로겸 상가조성공사2. 대지위치 : 충북 제천시 청진동 643번지

3. 공사개요

1) 공사면적 : 1,146.79m² (평)2) 용도 : 지하도로겸 상가3) 총수 : 지하 1 층 지상 1 층4) 구조 : R.C.5) 건축면적 : 1,146.79m² (평)6) 연면적 : m² (평)7) 사업허가일 : 1997년 3월 5일 (허가번호 제 97-18호)4. 계약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 20,000,000)

1997년 3월 10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사업시행자 (갑)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가 103-5 선덕실업(주)
 성명 : 이 선 군
 사업자등록번호 : 501 - 81 - 20075
 전화 / Fax : (053) 256 - 4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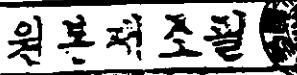
공사감리자 (을)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기 152
 사무소명 : 삼복토목엔지ニア링
 대표 : 윤 경철 (인)
 전화 / Fax : (053) 421 - 9896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명 및 등급 : 토목기사 2급 등록번호 : 96205040927E

성명 : 박 윤희 (인)

주민등록번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 601-012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 / 전화(051)467-0141~5 / 전송 468-3132

총무과 과장 김평철 담당자 전병인 <http://pcmo.moc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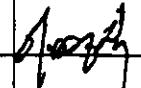
문서번호 총무 58825 - 165

시행일자 2001. 2. 1.

(경유)

받음 제천시장

참조 도시건축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1. 2. 06	결 재	승인 
	번호			
처 리 과	도시건축과		공 동	
담 당 자			람 제	도시 건축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감리전문회사 등록 여부 회신

- 도건 57310-229 ('01. 1. 31)의 관련입니다.
 - 귀시에서 확인 의뢰한 삼북토목엔지니어링 및 청일엔지니어링은 우리청에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결 총무과장 김평철



제전시

우(390-701)제전시 전남동12-2/전화(0443)640-6364(영)6364전송640-6379
처리부서:도시건축과(별관1층) 과장 신승우 / 지방토목주사 이병식 / 담당자 이병식

문서번호 도전58700 - 393

시행일자 2001. 2. 15. (년)

(경 유) : (제 1 안)

받 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참 조 : 총무과장

보존기간	년	시 장
공개여부	·	<i>기밀</i>
부시장		
국 장	전결	
과 장	<i>○</i>	
기안자	<i>차미나</i>	협조
실사자		실사일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152
- 회사명 : 삼복토목 엔지니어링
- 대표자 : 윤 경철

○위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위반

○위반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업을
이행

붙임 :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 부 “끝”

(제 2 안)

받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152 삼복토목엔지니어링 대표 윤 경철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시행 승인한 청전지하도로점 상가

-전 58700-

시설의 공사감리를 귀사와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 대표 이 선 균과 공
사감리를 할 목적으로 1997년 3월 10일 공사감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4. 책임감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귀사는 등록청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감리업에 따른 공사감리 계약을 하였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위반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152

- 회사명 : 삼복토목 엔지니어링

- 대표자 : 윤 경 철

○위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위반

○위반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업을

이행
각,

제 전 시

우(390-701)제전시 전남동12-2/전화(044)640-6364(영)6364전송640-6379
저리부서:도시건축과(별관1층) 과장 신승우 / 지방도록주사 이병식 / 담당자 이병식

문서번호 도전58700 -5

시행일자 2001. 1. 9. (년)

(경 유) :

받 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
장풍건설(주) 대표 권태진

참 조 :

보존기간	년	시 장
공개여부		
부시장		74000
국 장	전결	
과 장	9	
기안자	★ 1004	협조
심사자	74000	심사일 2001. 1. 9

제 목 : 공사지명원 제출 확인 의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3-5번지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 이 선균에게 사업시행 허가한 청천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 대하여 귀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 회사 대표 이 선균과 '97년 3월 3일 계약을 하고 '97년 3월 10일 착공, '97년 9월 30일 준공키로 하고 '97년 3월 31일 착공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위착공제 제출과 아울러 선덕실업(주)에서는 시공업자 변경신고를 당초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유인균에서 귀사로 '97년 3월 31일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4. 이과정에서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은 귀사의 「공사지명원」을 제출하였는데 공사지명원의 내용중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 및 상가의 시공" 실적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 및 상가의 시공"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진영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춘국)이였습니다.

6. 귀사에서는 제천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시 선덕실업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의 규명이 필요하여 자료사본을 송부 하오니 확인 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2001. 1. 2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지명원 사본 1 부 "풀"

제 전 시 장

선덕실업주식회사

우(700-261)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3-5번지 / 전화(053) 256-4457 / 담당 김영근

문서번호 97 - 2 호

시행일자 1997. 3. 31.

(경유)

수신 제천시장

참조 도시과장

선 결			지 시
	일자	시간	
결	97. 3. 31		거상
수 번호	325		재
처 리 과	도시과		공
담당자			람

제목 시공업자 변경신고

청전지하도로(상가겸) 시설공사 시공자로 선정된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를 폐사 사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코져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당초시공회사	변경시공회사
청전지하도로(상가겸)시설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인균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 장풍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진

붙임 1) 지명원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풀”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근



제천시

현장대리인 선정계

공사명 : 제천 청진 지하도겸 상가 신축공사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기인을 선정하였기에 기술자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현장대리인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진동 997-1 에덴아파트 102-1108호
성 명 : 김 병 국
생년월일 : 1961년 7월 17일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구분 : 토목분야고급기술자
발급번호 : 0097830

1997년 3월 일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번지

장 풍 건설(주) 대표이사 권태진

고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토목) 4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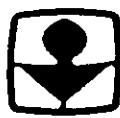
급기술자(토목) 3명, 주무기술자 1명 3명

제천시 장귀하

고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토목) 4명, 중

급기술자(토목) 3명, 주무기술자 1명 3명

工事都給指名願



長豊建設株式會社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

TEL. 48-2501/3 FAX. 731-2503

■ 주요공사실적 ■

< 단위 : 천원 >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한전강서지점사옥 공조위생설비공사	한국중공업(주)	249,150	86. 6 - 87. 5.	
반월2공구5차 포장공사	삼도건설(주)	135,674	86. 6 - 86. 12.	
삼천포화력집진기 설치공사	한국중공업(주)	400,680	86. 8 - 86. 11.	
서천화력발전소방진망설치 기초공사	한국전력보수(주)	426,500	86. 9 - 87. 2.	
진주시 중앙로지하도겸상가 시설공사	성광설업(주)	9,000,000	87. 1 - 88. 5.	
왕정동공동구 설치공사(터널)	남광토건(주)	1,749,000	87. 3 - 88. 6.	
한국전력문산지점 신축공사	한국중공업(주)	1,200,000	87. 4 - 88. 5.	
코타레저타운 신축공사	(주)한국코타	1,916,750	88. 7 - 89. 12.	
서원대야외음악당 스텐드공사	서원대학	549,500	88. 7 - 88. 12.	
보성강 수력교체 증설공사	한국중공업(주)	681,380	88. 12 - 90. 6	
154KV영동변전소 토건공사	새한건설(주)	606,034	88. 11 - 89. 10.	
학성회관 증축공사	서원대학	174,000	89. 4 - 89. 6.	
안성컨트리클럽 건설공사 3공구	남광토건(주)	1,721,830	89. 4 - 89. 12.	
보성강수력방수로 및 설비보강공사	한국중공업(주)	159,500	90. 1 - 90. 5.	

장 풍 건 설 주식 회사

우 220-950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 / 전화 033-742-0914 / 전송 742-8841 / 담당 : 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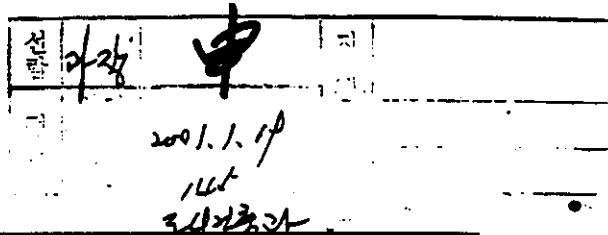
문서번호 : 기술 제 201-106 호

시행일자 : 2000. 1. 17.

수 신 : 제천 시 장

창 조 : 도시건축과장

제 목 : 공사지명원 제출 사실 통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 도건 58700-57(2001. 1. 9)호 관련하여 공사지명원 제출 경위를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사지명원 제출처 : 선덕실업주식회사

나. 공사지명원 제출경위

1) 선덕실업(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선덕실업(주)에서 공사지명원을 요구하여 당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지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2) 선덕실업(주)과 당사간에 도급계약 체결시 당사를 잘 알고 있는 인사의 추천으로 양사간에 협의하여 약정한 사항임으로 공사지명원을 도급계약 전에 선덕실업(주)에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공사지명원 변조경위

1) 변조사실 유무 인지 경위

- 지난 2000년 12월 제천시 의회 청문회 및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원 참고인 조사시 당사가 선덕실업(주)에 제출한 공사지명원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되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변조된 내용

- 공사지명원중 주요공사 실적 내용에 당사의 실적이 아닌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 및 상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사에서 선덕실업(주)에 제출한 주요공사실적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 이는 당사에서 사용중인 주요 공사실적 서식은 공사내용 13 개를 기재도록 되어 있으나 귀시에서 보관중인 공사지명원 당해 주요공사실적 장에만 14개의 공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주요공사실적 장에 표기된 <단위:천원>의 <>표기는 당사 서식표기로 사용치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 주요공사실적 밑에 표기된 가는선 및 굵은선 또한 당사의 주요공사실적 서식상의 표기와 다른것이며, 공사명을 기재시 당해 주요공사 실적장은 띄어쓰기를 한점, 빨주처를 기재시 중앙정열을 한점등 귀 시에서 보관 중인 공사지명원중 당해 주요공사실적 장이 아닌 여타의 주요공사실적 장을 확인 하여 보면 확인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또한 당사는 선덕실업(주)에 제출된 공사지명원이 귀시에 보관되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고의로 당해 내용을 변조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 부 : 주요공사실적 1부 끌.

장 풍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권 태 술



■ 주요공사실적 ■

(단위 : 천원)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한전강서지점사옥공조위생설비공사	한국중공업(주)	249,150	86. 6.-87. 5.	
반월2공구5차포장공사	삼도건설(주)	135,574	86. 6.-86.12	
삼천포화력집진기설치공사	한국중공업(주)	400,680	86. 8.-86.11.	
서천화력발전소방진망설치기초공사	한국전력보수(주)	426,500	86. 9.-87. 2	
양정동공동구설치공사(터널)	남광토건(주)	1,749,000	87. 3.-88. 6.	
한국전력문산지점신축공사	한국중공업(주)	1,200,000	87. 4.-88. 5.	
코타레저타운신축공사	(주)한국코타	1,916,750	88. 7.-89.12	
서원대아외울악당스탠드공사	서원대학	549,500	88. 7.-88.12	
보성강수력교체증설공사	한국중공업(주)	681,380	88.12.-89. 6.	
154KV영동변전소토건공사	새한건설(주)	606,034	88.11.-89.10.	
학생회관증축공사	서원대학	174,000	89. 4.-89. 6.	
안성컨트리클럽건설공사3공구	남광토건(주)	1,721,830	89. 4.-89.12	
보성강수력방수로및설비보강공사	한국중공업(주)	159,500	90. 1.-90. 5.	

■ 주요공사실적 ■

(단위 : 천원)

공 사 명	발 주 처	공사금액	공 사 기 간	비 고
서원대체육관신축공사	서원대학	400,000	90. 4.-90.12.	
삼천유원지제방축조공사	춘천시청	262,000	90. 5.-91. 1.	
'예미-광하간농촌소득원도로공사	정선군청	112,500	90. 7.-90.12.	
조운동소방도로개설공사	춘천시청	185,180	91. 6.-91.12.	
원주공고진입교량가설공사	원주시청	282,000	91. 6.-92. 1.	
서석면수하2리취입보수해복구공사	홍천군청	175,291	90.12.-91. 5.	
어천신월제수해복구공사	정선군청	202,000	90.11.-91. 7.	
숙암리단임고냉지농촌수해복구공사	정선군북평면	107,643	90.11.-91. 7.	
운치-하미간농촌소득원도로수해복구공사	정선군청	299,150	90.11.-91. 8.	
예미-광하건농촌도로확장공사	정선군청	109,990	91. 6.-91.11.	
고한두문천하상정비공사	정선군청	289,000	91. 8.-91.12.	
좌편지구경지정리사업	평정농지개량조합	493,171	90.11.-91. 5.	
폐탄광산립복구(보성탄광)공사	태백시청	158,835	91. 4.-91.11.	

제 천 시

우(390-701)제천시 건남동12-2/전화(0443)640-6364(㈹)6364전송640-6379
저리부서:도시건축과(불관1층) 과장 신승우 / 지방토목주사 이병식 / 담당자 이병식

문서번호 도건58700 -ff

시행일자 2001. 1. 9. (년)

(경 유) :

받 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번지
서원건설(주) 대표 권태술

참 조 :

보존기간	년	시 장
공개여부		1999.01.01
부시장		<i>1999.01.01</i>
국 장		
과 장		
기안자	<i>☆☆☆☆☆</i>	협조
심사자	홍성봉	심사일 2001. 1. 9.

제 목 : 사업이행 보증서에 따른 의견조회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 우리 시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3-5번지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 이 선균에게 사업시행 허가한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 이 선균과 원주시 봉산동 1182번지 장풍건설(주) 대표 권태진과 '97년 3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 계약과정에서 귀사는 '97년 3월 제천 청전지하도(상가겸)시설공사 사업이행 보증을 하였습니다.
- 사업이행보증서 내용에 있어 "당사는 위 사업시공자 장풍건설주식회사가 선덕실업주식회사와 제천청전지하도로(상가겸)건설사업 시행협약서의 이행을 보증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귀사에서 사업이행보증의 경위와 내용의 진위서를 2001년 1월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문서 사본 1 부 “끌”

제 천 시 장

착공계정서

도로 신가 소속

공사명 : 제천 청진 지하도겸 상가 신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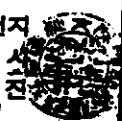
계약년월일 : 1997년 3월 3일

착공년월일 : 1997년 3월 10일

준공년월일 : 1997년 9월 30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1997년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번지
장 풍 건설 주식 회사
대표이사 권태근


증	파	진	110	전	기 26	77002
1997. 3. 31			846	(금)		
1997. 10. 30						

제천 시장 규하

첨부 1. 이하 97년 1주
2. 1997년 3월 21일

현장대리인 선정 계

공사명 : 제천 청전 지하도검 상가 신축공사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하기인을 선정하였기에 기술자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현장대리인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97-1 에덴아파트 102-1108호
성 명 : 김 병 국
생 년 월 일 : 1961년 7월 17일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구분 : 토목분야고급기술자
발급 번호 : 0097830

1997년 3월 일

강원도 원주시 연통 222-11번지
장 풍 건 설 주식 회 사
대 표 이 사 권 태

제천 시 장 귀하

재직증명서

성명	(한글) 김병국	(한자)
생년월일	1961년 7월 17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97-1 에덴아파트 102-1108호	
응모도	제출용	
입사년월일	1997년 3월 3일	근무부서
		기술부

상기와 같이 입사일이래 당사에 재직함을 증명함.

1997년 3월 일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 번지
장릉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진



제천시장 귀하

인감증명인 청계

	<p>상호 : 長 豊 建 設 株 式 會 社 본점 : 江 原 道 原 州 市 仁 洞 貳 貳 貳 貳 代表理事 權 泰 鎮 (400905-1037410)</p>
-----------------------------------------------------------------------------------	-----------------------------------------------------------------------------------------------------------------------------

위 인감은 당 회사의 代表理事 權 泰 鎮 이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3. 17
서기 19 년 월 일

신청인 : 長 豊 建 設 株 式 會 社
 代表理事 權 泰 鎮

대리인 : 김 은 740904-2785523
 원주시 대강동 1367-4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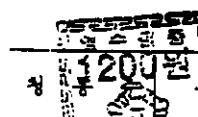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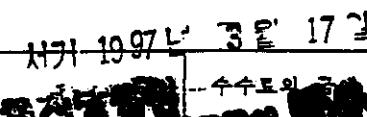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부산동	개	주 소		대조
매도용	수	주민등록번호 (별인정)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서기 1997년 3월 17일	
청원 200원	수수료 외 금액 금	원정

※ 공동 청탁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수임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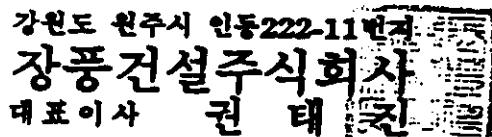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강원도 원주시 인동222-11번지 장풍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진
	

상기 인감을 귀사(관)에서 발주하는 아래 공사건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코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나이다.

공사명 :

19 년 월 일



귀하

이 행 각 서

당사는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청전지하도로(상가겸)시설공사 공공 시설
물에 대하여 사업완료(준공)와 동시에 무상(기부채납)으로 제천시에 귀속
시킬 것을 각서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1997. 3.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가 103-5

선 덕 실 업 주식 회사

대 표 이 사 이 선근



제천시장 귀하

사업 이 행 보 증 서

사업명 : 제천 청전 지하도(상가겸) 시설공사

시행자 : 선덕 실업 주식회사

시공자 : 장풍 건설 주식회사

사업금액 : 29억

사업규모 : 연장 44M

연면적 1,146.79M²

사업기간: 착공후 6개월

당사는 위 사업시공자 장풍 건설 주식회사가 선덕 실업 주식회사와
제천 청전 지하도로 (상가겸) 건설 사업 시행 협약서의 이행을 보증합니다.

1997. 3.

보증인:

서원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번지

제천시장 귀하

인감증명신청



상호 : 西原建設株式會社
본점 : 江原道 原州市 鳳山2洞 1182
代表理事 権泰述

위 인감은 당 회사의 代表理事 権泰述 이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 년 1997. 3월 24 일

신청인 : 西原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権泰述

대리인 : 김은정 40904 - 2785523

원주시 비장동 1367-4 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충북도 청주시

도, 대로운 자 (법인명)

주민등록
(동기증명서)
번호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조조하여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10. 07. 24 일

신청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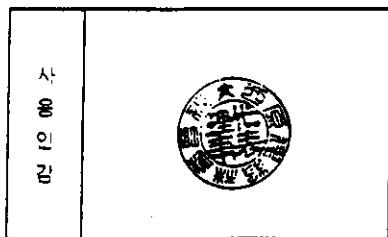
통수료의 금액

대조
증명

※ 상법등기 처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기재하지
아닌 경우에는 출판권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증명자 : (성명) 회자 아니한
그ほか 보증할 수 없습니다.)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을 귀 제천시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장충건설(주)사업이행
로 중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폐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명: 제천청전 지하도(상가겸)시설공사

1997년 3월 일

서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번



제 천 시 장 귀하

장 풍 건 설 주식 회사

우 220-950 / 강원도 원주시 통산동 1182 / 전화 033-742-0914 / 전송 742-8841 / 담당 : 은민수

문서번호 : 기술 제 201-107 호	과장	지 시
시행일자 : 2001. 1. 17.		
수 신 : 제천 시 장	전 실자	2001. 1. 19
참 조 : 도시건축과장	수 시간	
제 목 : 도급계약 보증 사실 및 보증 종료 통보	수 번호	
	처리부	도시건축과
	담당자	
	심사자	신자일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건 제58700-58(2001.1.9)호 관련하여 당사의 도급계약보증 경위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도급계약 보증 경위 및 내용

1) 장풍건설(주)가 선역실업(주)로부터 1997년 3월 2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체결 당시 발주자인 선역실업(주)는 수급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을 불이행 할경우 발주자는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할 계약보증사를 요구함에 따라 수급자의 요청으로 당사가 장풍건설(주)와 선역실업(주)와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 보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는 정부발주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수급자의 계약이행보증을 담보로 하는 수급인 보증을 세우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자의 시공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들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보급하는등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적 사항인 수급자의 계약이행 보증입니다.

3) 따라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수급자 보증인의 책무는 도급계

약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이행할 의무인 시공을 보증하는 것이고, 당사가 보증한 것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수급자의 계약이행 보증으로서 이는 양사 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 귀 시에서 조회한 사업이행보증의 경위 및 내용

1) 귀 시에 제출된 보증서는 위 항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발주자인 선덕실업(주)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수급자인 장풍건설(주)에 대하여 시공이행보증을 당사에서 한 것으로서.

2) 이는 보증서 약관인 "당사는 위 사업시공자 장풍건설(주)가 선덕실업(주)와..."라는 문구에서 당사가 보증한 것은 장풍건설(주)과 선덕실업(주)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를 보증한 것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당시 발주자인 선덕실업(주)는 위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가 공사착공시 착공계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임으로 제천시장귀하로 시공이행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며 또한 선덕실업(주)에서 전체 건설공사 예정금액이 29억원으로서 전체공사를 수급자에게 도급줄 예정이므로 우선 도면이 확정되어 공사금액이 합의된 토목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등은 공사 도면이 확정되면 양사간에 공사금액을 차후 다시 협의하여 도급계약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전체 건설공사계약 예정금액에 대하여 도급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줄것을 요구하여 전체 공사계약 예정금액을 사업금액으로 표기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발주자가 수급자와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후 공사대금 지급 지연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을 함으로서 수급자는 도급계약 체결된 토목공사만 이행한후 발주자인 선덕실업(주)과 도급계약을 종료 하였고, 그외에도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시 없으므로 이에 따라 당사가 수급자에 대하여 보증한 계약보증도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끝.

장 풍 건 설 주식 회 사

대 표 이 사

권 태 술



建設工事 都給契約書

1. 工事名: 제천 청전 지하도 결상기 솔루션 토목공사

2. 工事場所: 충북 제천시 청전동 143 (도로) 일원

3. 工事期間:

着工: 1997 年 3 月 10 日

竣工: 1997 年 9 月 30 日

4. 都給金額: 一金 造價試算 五千四百九十五萬 원整 #1,254,090,000.-

供給價額: 一金 造價尾款 140.9 萬 원整 #114,090,000.-

附加價值稅額: 一金 造價尾款 140.9 萬 원整 #114,090,000.-

5. 竣成部分給의 時期 및 方法: 施工 30% 가정시 자료제공 및 가정부수는 매달 지급한다.

6. 現症擔保 責任期間: 3년

7. 現症補修 保證金率: 공사비의 1~3%

8. 選擇價金率: 2.1%

9. 契約履行保證金: 一金 造價試算 五千四百九十五萬 원整 #1,254,090,000.-

都給人과 受給人은 이 契約書 및 工事都給契約條件와 別添 設計圖 및 示方書에
의하여 工事都給契約을 締結하고 그 증거로 이 契約書 및 關聯文書를 2종 作成하
여 각 1통씩 保管한다.

1997 年 3 月 2 日

都 紿 人

住 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03-5

商 號 善德實業株式會社

姓 名 代 表 李 善 均



受 紿 人

住 所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

商 號 장풍건설주식회사

姓 名 대표이사 권 태 친



受給人保證人

住 所

江原道 原州市 凤山2洞 1182

商 號

西原建設株式會社

姓

代表理事 權 泰 迹



도 급 내 역 서

- ◎ 공사명 : 제천청전 지하도겸상가 신축공사
- ◎ 계약금액 : 일십이억오천사백구십구만원정<₩1,254,990,000>
- ◎ 공급가액 : 일십일억사천구십만원정<₩1,140,900,000>
- ◎ 부가세 : 일억일천사백구만원정<₩114,090,000>

강원도 원주시 인동 222-11번지
장풍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



항 목	금 지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비 고
1. 보통공사						
1. 모 품					104,727,600	
2. 배수공					41,321,100	
3. 계계도로공					158,213,900	
4. 조경공					15,655,540	
5. 가시설공					260,206,000	
6. 부대공					39,222,475	
7. 기타재					401,603,340	
소 계						
1. 일반관리비 재정비	6.58	1 4			66,565,957	
9. 산재보험료		1 4			9,801,119	
10. 안전관리비		1 4			14,783,354	
11. 이 윤	65	1 4			28,799,615	
계						
1. 부가세별도						

정통건설 주식회사

建設工事 契約變更 合意書

1. 工事名: 제천 청전지하도 겸 상가신축 토목공사

2. 工事場所: 충북 제천시 청전동 643(도로)일원

3. 工事其間

區 分	당 초	변 경
着工日	1997.03.10	1997.03.10
竣工日	1997.09.30	1998.03.20

(*장외공사 비둘기아파트 담장 및 하수도 기타 공사는 시행시 공기 별도 계산함.)

4. 都給金額

區 分	金額
當初	供給價額 일금일십일억사천구십만원정(₩1,140,900,000)
	附加價值稅 일금일억일천사백구만원정(₩114,090,000)
	都給金額 일금일십이억오천사백구십구만원정(₩1,254,990,000)
변경	供給價額 일금일십일억구천구백오십만원정(₩1,199,500,000)
	附加價值稅 일금일억일천구백구십오만원정(₩119,950,000)
	都給金額 일금일십삼억일천구백사십오만원정(₩1,319,450,000)
增減	(증)일금육천사백사십육만원정(₩64,460,000)

5. 既成部分給의 支給時期 및 方法

기성 미지급금 98. 1. 24.(채권단에게 발행한 각서) 일금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과 부가세 일금삼천팔백만원정(₩38,000,000)은 1998년 2월 9일 어음으로 지급하고 선덕실업(주)에서 채권단에 발행한 각서는 수급인이 1998년 2월 25일까지 회수하여 선덕실업(주)에 제시한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1998년 2월중으로 일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을 지불하고 잔여금은 3월중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급인 요청에 의거 검토하여 분할지급하고 잔여공사분은 준공검사후 지급하기로 한다.

6. 특약사항중 2항 및 3항은 추후 재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공사금액의 3%

9. 자체 상금율 : 2/1000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변경 합의서에 의하여 잔여공사를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그 증거로 이 변경합의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설계변경추가시공분 확정내역서 1부



1998년 2월 9일

都給人

住 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03-5

商 號: 善德實業株式會社

姓 名: 대 표 이 선 云



受給人

住 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

商 號: 長豊建設株式會社

姓 名: 대표이사 권 태 진



입회인

住 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350-1

姓 名: 권 영 진



제 전 시

우(390-701)제전시 전남동12-2/전화(044)640-6364(㈹)6364전송640-6379
처리부서:도시건축과(별관1층) 과장 신승우 / 지방토목주사 이병식 / 담당자 이병식

문서번호 도전58700 - 304

시행일자 2001. 2. 8. (년)

(경 유) :

받 음 : 받는곳 참조

참 조 :

보존기간	년	시 장
공개여부		수
부시장		
국 장		
과 장	전결	
기안자	이병식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법률사무의뢰

1.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우리 시에서 지하도로겸 상사시설을 민간자본유치와 관련하여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허가를 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허가와 관련하여 제반이행사항이 되지 않고 있어 변호사님의 자문
 을 받아 업무처리에 반영코자 하오니 부디 자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 임 : 1.사업시행현황 1 부

- 2.자문사항 1 부
- 3.협약서 1 부
- 4.허가서 1 부
- 5.이행각서 1 부
- 6.공사감리계약서 1 부
- 7.공사실적서 1 부
- 8.법원결정서 1 부

제 전 시 장

받는곳 : 서울 기백수변호사
 제전 김경원변호사
 청주 김영호변호사

자 문 사 향

1) 허가기간이 1997년 12월 31일로 종료 되여 수차에 걸쳐 준공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공을 기피하여 1999년 5월 20일 관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서 3개월 이내에 준공을 이행한다고 하여 준공이행에 따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지 않아 전기가 단전되는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원성과 지하시설내의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어 행정조치인 허가(승인)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관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처분)와 협약사항(제28조 인. 허가 및 협약의 취소)과 허가조건(타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취소를 하였을 때 이와 관련하여 선덕실업에서는 허가(승인)취소의 부당에 따른 행정소송인 허가(승인)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제기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분별로 준공검사를 받아 임시사용 승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승인)취소는 정당한 것 인지요? 부당하다면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관리가 되지 않아 시설물이 폐허가 되고 우범지대화가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른 법적 대책이 무엇인지요?

* 허가(승인) = 이하 허가취소라 표기함

2) '98년 8월 3일 위 시설을 준공키 위하여 제천시에서는 보증채무(2억원)를 3개월 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99년 6월 4일 제천시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내용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선덕실업은 현재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구상금의 회수가 불가한 상태임에 따라 채무보증시 협약한 담보의 집행에 있어 20년간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으로 되어 있는바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은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채무보증 액만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허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이 20년간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을 암류조치(현재는 공부가 없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여 추심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허가 취소요건(위1항)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선덕실업으로부터는 구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3) 제2항과 관련하여 제천시 의회에서는 대위면제로 인하여 제천시에 손해를 끼
쳤음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되여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
원으로 하여금 구상금 청구를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4)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는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주시 소재 장풍건설
에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아 제천시로부터 위 허가사항인 26개 점
포에 관한 항후 20년간의 무상사용권에 대한 제3자에게 분양. 임대하여 그임료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제천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주지방법
원과 대구지방법원의 채권압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채권압류에 대하여 제천
시가 위1항의 허가취소요건에 의하여 허가취소시 선덕실업에 허가한 26개 점포
에 관한 항후 20년 간의 무상사용권에 의한 분양. 임대하여 그임료 등을 수령
할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장풍건설이 법원에 의하여 판결 받은 채권의 압류 판
결은 허가취소와 함께 소멸 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떠하
신지요 ?

또한 하가 취소로 인하여 채권의 압류판결이 무효가 되었을 시 장풍건설에서는
제천시를 상대로 무슨 조치가 예상되는지요 ?

5)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는 1997년 2월 청천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건설사업
에 대한 협약을 하고 '97년 3월 5일 허가를 받아 '97년 3월 31일 공사를 착수하
였고 상가시설의 분양은 공사 공정의 10%가 되면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분양계획서를 제출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7년 4월경 동 건설사업
의 상가분양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면적이 상이
(점포)하고 사업비의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보완 제출토록 하였으나 보
완사항 이행이 되지 않은채 '97년 4월부터 선덕실업 임의대로 분양하였고 또한
채권에 의한 분양계약 등을 함으로써 2중 또는 3중 계약 등으로 인하여 분양피
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은 선덕실업과 분양자간의 쌍방계약 이라고는 하
지만 허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로 민원인 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제천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

또한 분양피해자의 구제대책은 없는지 ?

이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가 할수 있는지요 ?

6) 사업시행자인 이선균은 선덕실업(주)와 성광실업을 소유하고 있던 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건설사업자 모집공고시 응모자격으로 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자에 대한 제출서류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진주시 지하도로겸 상가운영업체인 성광실업(대표 이 선 균)의 경영실적을 제출하여 사업자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같은 선덕실업의 기업진단 보고서가 아닌 성광실업의 경영실적보고서 제출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대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요?(물론 충분한 서류검토를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책임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현재 시설물을 완료한 상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7)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주) 대표 이선균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시 (선덕실업+고려산업개발)로 참여하여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사업착공전 원주시 소재 장풍건설로 시공자 변경 신고를 하여 첨부서류를 장풍건설이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공사실적이 있는 것으로 장풍건설의 공사지명원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는데 일부분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요?

(장풍건설은 다른 시의 공동구 공사실적이 있었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할 시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8) 선덕실업에서는 장풍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하면서 연대 보증업체로 강원도 원주 소재 서원건설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하면서 우리시와 선덕실업간에 체결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협약에서 정한 사업이행보증(불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이행 보증을 한 서원건설에 사업이행보증 경위와 사실에 대하여 조회를 한 결과

서원건설에서는 선덕실업에서 공사 착공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임에 따라 제천시장귀하로 작성요구 하여 작성된 것이고 예정금액이 29억원 전체공사를 수급자에게 도급 줄 것으로 합의하여 추진키로 하고 우선 전체금액을 표기하여 도급제

약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발주자 선덕실업이 도급계약후 공사대금 지연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을 함으로서 수급자는 토목공사만 이행한 후 도급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서원건설을 상대로 사업이행을 촉구 할수 있는지요 ?

9)허가취소를 하였을 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예상되는데 소송의 대상은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이 아닌 선덕실업에 대한 체권자 또는 제3의 이해당사자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이 제기 되었을 시 꼭 현금으로의 판결이 나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인 점포시설(대물)로 대응코자 함)

또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시 어느 정도의 승소, 폐소율은 어느 정도의 예측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10)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감리계약을 대구시 소재 삼복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김 주현 과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계약사항에서 정한 비용을 주지 않음에 따라 감리를 착수치 않았으며 공사는 감리 없이 진행이 되었고 공사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감리자가 감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처벌코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97년 3월 당시 등록사실 조회를 한결과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감리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처벌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

11)우리시에서는 지하통로(인도)가 완공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상태에서 선덕실업 또는 제3자가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하통로만 사용한다면 선덕실업과 체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법적대응 여부는 어려 한지요 ?

12)우리시에서 허가(승인)취소후 완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이비용을 소송과 연계하여 청구 할 수 있는지요 ?